

## ● 수입금징수업무세칙(050102)

제정 1998. 1. 1. 시행세칙 제 17호  
개정 2007. 3. 28. 세칙 제214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회계규정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중 공사가 부과하는 징수금에 대하여 그 징수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3.28>

**제2조(적용범위)** 공사가 부과하는 징수업무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07.3.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3.28>

1. “징수금”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양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연체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하며, 이를 고지하여 수납하는 것을 “징수”라 한다.
2. “체납”이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체납액”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3. “연체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납부기한내의 금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제 2 장 징 수

**제4조(징수방법)** 징수금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월의 순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 제1호 단서의 동일순위 월의 징수금을 분할하

여 징수할 때에는 연체료, 관리비, 임대료, 기타 징수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독려)** 해당(분양담당)부서의 장은 징수금의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호별방문, 독촉장 발송 등 방법으로 징수 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실적 보고)** 분임징수관은 월별 징수금의 징수실적을 매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납입필통지서의 관리)**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징수금의 납입필통지서는 지역별, 일자별로 분류하고 확인하여 보존한다.

### 제 3 장 체납자 정리

**제8조(연체료 징수)** ① 징수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 당월까지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체납일수가 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납부최고서)** 공사 회계규정 제50조에 의하여 징수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발송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체납실태 점검)** 해당(분양담당) 부서의 장은 징수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사가 회수하여야 할 채권금액이 공사가 주택을 인도받았을 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체납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소조치 의뢰)** 징수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회계규정 제54조에 의한 제소는 임대료 또는 기타 징수금을 3월 이상 체납한 때에 소송업무규정에 의거 송무담당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12조(제소조치 의뢰전 최종납부최고)** ① 제소조치를 송무담당 부서장에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뢰전에 일정한 기한까지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제소조치하겠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최종납부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분양담당) 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한 제소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체납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해제통고 및 재산명도 최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진행사항 통고)** ① 해당(분양담당) 부서의 장은 재산명도 소송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1차 소송통고를 하고 관할법원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2차 소송통고를 하여 체납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해당(분양담당) 부서의 장은 재산명도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산명도 확정판결 통고를 하여 체납금의 납부 및 자진퇴거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금의 분할징수)** ① 해당(분양담당) 부서의 장은 세칙 제11조에 의하여 제소후 판결전 또는 선고후 체납자가 체납금(이하 소송비용 또는 강제집행비용을 포함한다)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7.3.28>

② 제1항에 의하여 체납액을 분할 징수할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분할이행 각서를 징구하고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소송진행 또는 재산명도 집행을 해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가 제2항에 의하여 체납금 전액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체납금액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분양담당)부서장은 분할징수허용을 취소하고 소송진행 또는 판결에 따라 재산명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98. 1. 1>**

이 시행세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 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9조 관련)】

관 리 20 . . . . .

수 신

제 목 납부최고 (1차)

1. 귀댁의 건승함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납부최고 하오니 20 . . . . .까지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과 목	체 납 내 역				비 고
	체 납 월	금 액	연 체 료	계	

3. 만약 3개월 이상 체납될 때에는 변호사에게 계약의 해약 및 가옥명도 소송제기를 위임하게 되며, 이후에는 체납금을 완납하시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 부담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별지 제2호 서식(제12조 관련)】

관 리 20 . . . . .

수 신

제 목 납부최고 (2차)

1. 귀댁의 건승함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납부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체납금이 완납되지 않아 최종납부 최고하오니 20 . . . . .까지 완납하기 바랍니다.

아 래

과 목	체 납 내 역				비 고
	체 납 월	금 액	연 체 료	계	

3. 만약 3개월 이상 체납될 때에는 변호사에게 계약의 해약 및 가옥명도 소송제기를 위임하게 되며, 이후에는 체납금을 완납하시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 부담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별지 제3호 서식(제12조 관련)】

## 계약해제통고 및 재산명도 최고

1. 귀하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 )계약에 의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금을 장기 체납하여 위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본인에게 계약해제 및 재산명도 소송제기를 위임하였으므로 동계약서 제 조에 의거 해약하오니 동 재산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조속히 명도하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위 재산을 자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재산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통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소송대리인 : 변호사  
경 기 도 : 시·군 읍면동 가 번지

귀하

※ 주 : ( )은 해당계약명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제13조 관련)】

관 리 20 . . . . .

수 신

제 목 재산명도소송 통고(1차)

1. 귀택의 건승함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당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금이 체납되어 여러 차례 납부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금이 완납되지 않아 변호사에게 재산명도소송을 위임하여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약하였습니다.

3. 만약 귀하께서 20 . . . . . 까지 위 주택을 자진명도하지 않거나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명도소송이 진행되게 됨을 알려드리오며, 체납금을 납부할 때에는 제소의뢰에 따른 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됩니다.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별지 제5호 서식(제13조 관련)】

관 리 20 . . . . .

수 신

제 목 재산명도소송 통고(2차)

1. 귀택의 건승함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당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금이 체납되어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해약하고 변호사에게 소송 일체를 위임하여 재산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만약 귀하께서 20 . . . . . 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명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별지 제6호 서식(제13조 관련)】

관 리 20 . . . . .

수 신

제 목 재산명도확정판결 통고(1차)

1. 귀댁의 건승함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당공사에게 ( )계약을 체결한 상기 재산은 여러 차례에 걸친 납부최고 및 소송통고 등 제반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금이 장기간 체납되어 소송절차에 따라 20 . . . . . 재산명도판결(사건번호 호)을 받은 재산이므로 당 공사에 자진명도하거나 체납금을 20 . . . . . 까지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한까지 자진명도 또는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강제집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 주 : ( )은 해당 계약명을 기재



